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송석준ㆍ이종배ㆍ김석기

김정재・박덕흠・소병훈

이양수 · 유상범 · 엄태영

송언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(사망 38명, 중상 8명, 경상 2명)가 발생하였음.

그러나,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,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 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건설공사현장에 융·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,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"무선안전장비"를 「전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공사작업자의 상태,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여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로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 신설).
- 나. 건설공사현장에 융·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,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 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"무선안전장비"란 「전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공사작업자의 상태,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여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.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2조의2(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)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설 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2조제12호의 무선안전장비와 제10조의2의 융·복합 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2. "무선안전장비"란 「전파</u>
	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무
	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5
	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
	용하여 공사작업자의 상태,
	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
	악하여 위험발생을 알려주는
	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62조의2(건설공사의 안전관리
	시스템 구축) ① 건설사업자는
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
	에 따른 건설공사 단계에서의
	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2조제
	12호의 무선안전장비와 제10조
	의2의 융·복합 건설기술 등을
	활용하여 안전장비와 안전관리
	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장

 비와
 안전관리시스템
 구축
 및

 운용에
 드는
 비용을
 지원할
 수

 있다.